

1.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포시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김포시의 2022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 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8
경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상진
2023년 3월 13일



2. 감사 VS 검토



— 감사 —

높은 수준의 확신

→ 기업

— 검토 —

낮은 수준의 확신

→ 정부

3. 검토의견



적정의견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된 점이 발견되지 않음

한정의견

OO을 제외하고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된 점이 발견되지 않음

부적정의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4. 관련법령



「지방회계법」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 ③ 제15조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